

이 보도자료는 4. 24. 14:00부터 보도해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

공보담당관 지정장 이태승

전화 055-259-4301 / 팩스 055-259-4695

보 도 자 료
2018. 4. 24.(화)

자료문의 : 형사2부장실
전화번호 : 055-259-4320
주책임자 : 형사2부장 서창원

제 목 수협조합장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

-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(지청장 이태승)은 오늘(4. 24.) ㄱ수협 산하 ㄴ어촌계 계장으로부터 조합장 활동비 및 신규어장허가 조건 등 명목으로 1억 2,000만 원과 ㄴ어촌계 보유 홍합어장 사용·수익권을 수수한 ㄱ수협조합장 겸 창원시 수산조정위원 AO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음
- 이와 함께 AOO에게 ㄴ어촌계의 공금 등으로 위와 같은 금전 및 이권을 공여한 어촌계장 BO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(증재등) 및 뇌물공여,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- 마산지청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음

I 피고인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

- AOO(58세, 구속기소), ㄱ수협조합장(2012. 2.~현재, 1997년부터 14년 동안 ㄴ어촌계장 역임) 겸 창원시 수산조정위원(2010. 8.~현재)
 - 2012. 3.~2015. 12. ㄱ수협 산하 ㄴ어촌계 계장 BOO으로부터 조합장 직무에 관하여 활동비 등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1억 2,000만 원을 수수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
 - 2015. 7. 창원시 수산조정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ㄴ어촌계에서 신청한 신규어장허가 조건으로 BOO으로부터 ㄴ어촌계 보유 홍합어장 1ha의 사용·수익권을 수수 [뇌물수수]
 - ※ 위 홍합어장의 사용·수익으로 2017년까지 3년 간 AOO이 얻은 수익은 약 2억 7,000만 원에 달함
 - ※ 수산조정위원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하는 수협조합장이나 수협조합장의 추천을 받은 어촌계장 등(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)이 되고, 면허어업의 적격성 등 구역 내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, 이 때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봄(수산업법 제96조의2)
- BOO(55세, 불구속기소), ㄴ어촌계 계장(2012. 2.~현재)
 - 2012. 3.~2015. 12. ㄴ어촌계 공금 1억 2,000만 원을 AOO의 조합장 직무에 관하여 활동비 등 명목으로 6회에 걸쳐 AOO에게 교부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 및 업무상횡령]
 - 2015. 7. ㄴ어촌계 총회의 의결 없이 홍합어장 1ha의 사용·수익권을 신규어장허가 조건으로 AOO에게 양도 [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]
 - 2015. 3. ㄴ어촌계 공금 1,656만 원을 자신의 아들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 [업무상횡령]

II 수사 경과

- '17. 5. 31. 경남지방경찰청, 창원지검에 기소의견 송치
- '17. 8. 16. 창원지검, 마산지청으로 이송
- '17. 12. L어촌계장 BOO, T수협조합장 AOO 등 조사
- '18. 1.~3. 통합 거래업체 운영자, 인근 어촌계 계장 등 참고인 조사, 통합어장 취득 경위 관련 자료 분석 등
- '18. 4. 17. AOO 구속
- '18. 4. 24. AOO 구속기소, BOO 불구속기소

III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

- 수협조합장 겸 수산조정위원으로서 산하 어촌계 운영과 신규어장허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, 조합장 및 그가 소속된 어촌계 계장이 서로 결탁하여 어촌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산을 빼돌려서 사익을 추구한 비리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다수 어촌계원들의 권익을 보호한 사안임
- 앞으로 마산지청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음 